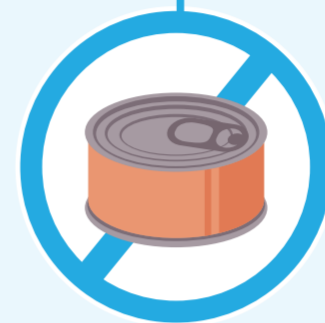


잠깐!



아프리카돼지열병, 구제역,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
해외 가축전염병의 국내유입 방지를 위해 **해외여행 후 입국시
육류 및 햄·소시지·육포와 같은 관련 제품은 반입이 제한되며,**

부득이하게 소지하신 경우 여행자휴대품신고서에 체크하고
공항·항만에 주재하는 검역본부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
◆ 해외직구 등 국제우편·특송의 경우에도 반입이 제한됩니다.



휴대한 동물검역 대상물품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

최고 1,000만원의 과태료 부과

※ 외국인의 경우 입국금지, 체류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◆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: 돼지고기 및 관련 제품
· 1회(500만원) → 2회(750만원) → **3회(1,000만원)**

◆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의 돼지고기 이외 제품 및 기타 국가
· 1회(100만원) → 2회(300만원) → **3회(500만원)**